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42

발의연월일: 2020. 9. 25.

발 의 자: 안민석·강민정·김병기

도종환・이동주・이성만

이용빈 • 전혜숙 • 조승래

조오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견을 5개 견종과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으나, 맹견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개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서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기 쉬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않음.

이에 맹견의 피해 대상을 반려동물까지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개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여가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맹견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맹견 등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2제1항제3호 중 "사람에게 신체적"을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개가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 등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의3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제4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입힌 소유자등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맹견이 <u>사람에게 신</u>	3 <u>사람이나 반</u>
<u>체적</u>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u>려동물에게</u>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맹견
	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개가 사
	람이나 반려동물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개를 맹견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4. (생략)

제46조(벌칙)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 4. (생 략)

④·⑤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 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 7. (현행 제4호와 같음)

제46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음)

- 3 -----
- _____

-----**.**

- 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입힌 소

 유자등
-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